|  |
| --- |
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2서식] <개정 2019. 3. 20.> |
|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 |
| **1. 원천징수의무자** |
| 법인명 |  (주)원유니버스 | 사업자등록번호 | 120-87-71630 |
| 사업장소재지 | 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, 승광빌딩 6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전화번호: 070-4006-0879) |
|   |
| **2.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** |
| 성 명 | 직 책 | 주민등록번호 |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|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|
| 양보근 |  | 791216-1144511 | 2022-07-27 | 37,195,500 |
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. |
| 2023 년 4 월 20 일 |
| 원천징수의무자 | 텍스트이(가) 표시된 사진  자동 생성된 설명(주)원유니버스 (서명 또는 인) |
| **OO 세무서장** |  귀하 |
|   |
| 작 성 방 법 |
| 1.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. 2. "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"란은 "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× (행사일의 1주당 시가 – 1주당 행사이익)"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 |
| 210mm× 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 |